



종로구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『가격표시제 의무지역 지정』 홍보 협조 요청

1. 귀 상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구에서는 종로구 관광특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및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, 관광특구 내 모든 소매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『가격표시제 의무지역』으로 지정·고시하오니,
3. 관광특구 내 소매점포 상인들이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귀 상인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가격표시제 개요

- 목 적 :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
- 지정대상 : 종로구 관광특구(종로·청계) 내 모든 소매점
 - 광화문빌딩 ~ 송인동사거리 간 청계로 구역 ※ 붙임 참조
 - 관광특구 내 점포수 : 약 10,810개소
- 대상업종 : 한국표준산업분류 51개 소매업종 ※ 붙임 참조
- 시 행 일 : 2018. 2. 1. ~
- 가격표시 방법
 - 단순, 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
(예 : 〇〇〇원 또는 ₩〇〇〇 등)
 - 라벨, 스탬프,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 상품에 표시
(예 : 판매가 〇〇〇원 또는 ₩〇〇〇원 등)
 -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를 이용하여 표시
(예 : 〇〇상품류 판매가격 〇〇〇원부터 〇〇〇원)

붙 임: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지정 고시문 및 지정서 각 1부. 끝.

종로구 청



광장시장, 광장전통시장, 세운상가, 동대문종합시장, 동문신진시장, 한일상가, 동대문문구완구거리, 종각지하쇼핑센터, 종로4가지하쇼핑센터, 종오지하쇼핑센터, 마전교지하쇼핑센터, 동대문지하쇼핑센터

★주무관 심준석 지역경제팀장 조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전결 08/30 양정열

협조자

시행 일자리경제과-46979 (2018.08.31.) 접수 ()
우 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43(수송동 146-2) / http://www.jongno.go.kr
전화 02)2148-2262 /전송 02)2148-5871 / ahrco007@mail.jongno.go.kr / 비공개(6)

